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95 발의연월일: 2024. 9. 12.

발 의 자:김교흥·부승찬·권칠승

허종식 · 모경종 · 노종면

이해식 · 강준현 · 소병훈

이용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중에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폭주 등으로 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실적으로 국토가 좁아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

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아울러 충전시설의 위치를 지상 또는 소방차가 출입하기 쉬운 주차장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4항 신설, 제11조의4제1항·제2항 및 제11조의5제1항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 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 전의 제10항) 중 "제7항 및 제8항"을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 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3항"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지상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을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

구역"을 각각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및 소방시설"로 한다.

제11조의5제1항 중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 및 소방시설"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의2제6항"을 "제11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1조의2제9항"을 "제11조의2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제11조의2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② (생	전용주차구역 등) ①・②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
	비, 화재알림설비 및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
	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지상에 위치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설치
	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소방
	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
	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
	록 주차장 출입구 근처에 위치
	하여야 한다. 그 밖의 필요한 사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u> (생 략)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	<u>⑥</u> 제5항
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u>⑤</u> ~ <u>⑨</u> (생 략)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 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① (생략)

②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 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u>제11조</u> 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u>충전시설</u>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u>⑦</u> ~ <u>⑪</u> (현행 제5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①		
제9항 및 		
제10항		
<u>/1 10 8</u>		
◎ (현행 제11항과 같음)		
<u>④</u> 제13항		
제11조의4(시정명령 등) ①		
제11조의		
2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충전시		
설, 전용주차구역 및 소방시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소관 대상시설 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 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 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 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할 것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의5(이행강제금) ①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1조의4제 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u>충전시설 및 전용주 차구역</u>의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 ⑦ (생 략)
-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
 2,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u>제1</u>
 1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에 필
 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
 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u>충전</u> <u>충전</u> 시설, 전용주차구역 및 소방시 설
제	
제	
	1조의2제8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과태료) ① <u>제11조의2제9</u>	제16조(과태료) ① <u>제11조의2제1</u>
<u>항</u> 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	1 8
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② 제11조의2제9항 및 제10항-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	
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u>.</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